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조례안심사보고서

1994. 12. 24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달서구청장
- 나. 제출일자 : 94. 12. 21
- 다. 회부일자 : 94. 12. 21
- 라. 상정일자 : 94. 12. 24

2. 제안설명요지(설명자 : 세무과장 민경철)

가. 제안이유

현행 대구직할시달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대한 14개 조례 중 12개 조례가 1994년12월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비과세감면대상 축소방침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2개 조례는 시한연장에서 제외하고 사회복지교통, 주택건설 및 교육등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개별조례에 대하여는 적용시한 연장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하고 적용시한을 1995년1월1일부터 1997년 12월31일까지 적용코자 함.

나.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다.

-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존 12개 개별 조례를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조례 하나로 통합 제정함.
- 통합조례내역
 - (1)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 가)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제2조 제1,2항”

- 나)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는통합조례 “제13조”
- 다) 대구직할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제4조”
- 라)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등의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제5조”
- (2)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 가)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제6조”
 - 나) 대구직할시달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감면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제7조”
 - 다) 대구직할시달서구시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제8조”
- (3)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 가)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제9조”
 - 나) 대구직할시달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조례는 통합조례 “제10조”
- (4)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 가) 대구직할시달서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제12조”
 - 나)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제13조”
 - 다)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달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제14조”
- 폐지조례내역
 - 가)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사업지원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 나) 대구직할시달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 신설조례내역 : 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감면조례는 통합조례 “제11조”
- 기존조례 중 통합 및 폐지조례 요약

| 현 행 조 례 | 대 체 조 문 | 감 면 대 상 | 감 면 세 목 |
|--------------------------|---------|--|----------------------|
|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자동차에대한감면 | 제 2 조 | 자활용사촌주유공자가 자활촌내 에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2000cc이하 보철용자동차 |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면제 |
|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 제 3 조 | 국가유공자단체가 소유하는 부동 산 | 재산, 종합토지세면제 |

| 현행조례 | 대체조문 | 감면대상 | 감면세목 |
|---|--------|---|-------------------------------------|
|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면 | 제 4 조 | 음성나환자가 음성나환자 집단촌 내에 소유하는 부동산 | 재산, 종합토지세면제 |
|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감면 | 제 5 조 |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 |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감면 |
|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제 6 조 | 사회교육시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 재산, 종합토지세감면 |
| 사립학교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 제 7 조 | 실험실습용항공기, 선박 | 재산세면제 |
|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 제 8 조 | 지정문화재 | 재산세 1.5/1000세율 적용 종합토지세 50%감면 |
| 향교재산에 대한 감면 | 시 한만료 | 폐지 | 달서구내 91.12.31이전 취득한 향교재산 없음 |
| 주차장에 대한 감면 | 제 9 조 | 노외주차장중주차용건축물(주차 시설부분)과 주차용토지, 수입금액기준 7%→3% 하향조정 |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재산할)면제 |
|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 제10조 | 매매용중고자동차 | 면허세 면제 |
| 신설 | 제11조 |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종합토지세 50%감면 |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제12조 |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재산세 50%감면 종토세 3/1000세율적용 |
|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 제13조 |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 | 종합토지세50%감면 |
|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 제14조 |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의 부동산 공사종업원의 급여 |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재산할), 사업소세(종업원할)면제 |
| 새마을사업에 대한 감면 | 시 한만료 | 폐지 | 농촌새마을사업관련 달서구면제대상 없음 |
|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외 13건 | 부칙 3 조 | 폐지 | 기존감면조례의 시한만료 및 조문재구성으로 폐지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백창기)

첫째 : 검토내용

- 1.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 본조례를 제정코자함.
- 2. 주요골자

- 현행 14건 구세감면조례가 적용시한이 1994년12월31일로 종기도래됨에 따라 '95지방세감면조례준칙에 의거 개별조례를 구실정에 맞게 통합하여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단일 감면조례를 제정코자 함.

- 본조례는 전체6장 16조 부칙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단체, 음성나환자집단촌, 종교단체, 재단법인의 의료업등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 제3장 사회교육시설용토지, 사립학교교육용재산, 지정문화재등에 대한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 제4장 신고한 노외주차장, 매매용중고자동차, 여객자동차터미널등에 대한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 제5장 임대주택, 사권제한토지, 지방공사부동산등에 대한 지역발전지원을 위한 감면

- 제6장 구청장에게 감면신청요구등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에는 시행일, 적용시한, 다른 조례의 폐지 등으로 제정되어 있음.

둘째 : 검토의견

본 조례제정은 내무부준칙에 의거 구실정에 맞게 제정된 조례로서 주민들에게 세제지원 및 조례의 이해와 활용을 도우며,

또한 복잡하게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14건 구세감면조례를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행정능률 향상에도 기여코자 하는 조례제정임으로 원안 의결함이 어떨까 생각됨.

4. 토론요지

사회복지지원과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관련단체의 사업지원을 위한 불균일과세 및 과세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본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많은 교통량을 유발시키고 사업규모가 소규모가 아닌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지역 주민을 위한 새마을금고 주관 순수주민복지사업(예 : 목욕탕운영, 도서관건립)에도 동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노력.

5. 수정안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반대 : 없음

7. 첨부 :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조례안 1부.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조례 (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직할시달서구세의과세면제 및 불균 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 2 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자활용 사촌 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본인명의로 등록하 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제 3 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지 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기타 수익사 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 4 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그 집단촌 안에서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부동산과 축사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 5 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 인에 한한다)가 인구 100만이상 시지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 3 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 6 조(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 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

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 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제 7 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하여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 8 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대구직할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 1 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구직할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대구직할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보존지구안의 부동산

제 4 장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제 9 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①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1일부터 당해년도 5월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text{영업기간(일수)}} \times 365$$

3. 부동산가액은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은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0조(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등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1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 5 장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

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②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3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 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 6 장 보 칙

제15조(감면신청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 3 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 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 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
2. 대구직할시달서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물에 대한구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3.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4. 대구직할시달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구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5. 대구직할시달서구지정문화재에 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
6. 대구직할시달서구임대주택건설에 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
7.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교육시설에 대한구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8.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
9.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에 대한구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10.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 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11. 대구직할시달서구향교재산에 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
12. 대구직할시달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과세면제에 관한조례
13.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구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14.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구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별표 1〕

상 이 등 급 분 류 표

| 급 수 | | 분 류 번 호 |
|---------------------|-----|---|
| 3 급 | |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
| 4 급 | | 108, 109, 111, 112, 113 |
| 5 급 | | 25, 26, 28, 29, 41, 73, 77, 92 |
| 6 급 (복 합 호수자) | 1 항 |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
| | 2 항 |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8, 60, 64, 65, 67, 69, 70, 74, 75, 88 |
| 비 고 | | 다만,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 그 대상이 된다. |

